

교육서비스 만족도조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22.09.06.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해전대학교의 교육, 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, 설비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서비스 측면에서의 만족도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서비스 만족도조사 운영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교육서비스만족도 조사체계(조사방법, 조사대상, 조사내용 등)에 관한 사항
- ② 교육서비스만족도 결과 개선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교육서비스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)

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이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.

제6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관계자의 회의참석)

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 내 관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.

제9조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2.09.06.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한다.